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전문위원 김 완 섭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구 예산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과 구가 합동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주요내용

- 법령준수 의무(안 제3조)
-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의견제출, 주민의 권리 부여(안 제4, 5조)
-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안 제6조)
 -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한 공고
-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절차 명시(안 제7조)
 -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실시
-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안 제9조)
-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원회, 협의회 등 운영(안 제10조)

□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절차, 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우리 구에서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책무와 주민의 권리를 정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무엇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제출된 의견을 위원회 등을 운영하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함으로써 예산 편성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여 지역 사회 발전과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제정안의 목적 및 기본이념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수정사항으로 아래 수정의견대비표와 같이

제명 “주민참여 예산제” 를 “주민참여예산제” 로 붙여 쓰고

안 제1조 “동법시행령” 을 “같은 법 시행령” 으로 하여 우리말로 표현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 라 한다)를 “영등포구(이하 “구”
라 한다)로 하여 실익과 문자절약 효과를 위하고

안 제2조 “영등포구” 를 약칭과 같이 “구” 로 표기하고

안 제3조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를
“「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로 표기하여 의미를 확실
히 하고

안 제4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청장(“구청장”이라 한다)” 를 “구청장”
으로 표기하고

안 제5조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영등포구” 를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구” 로 수정하여 법률용어의 표준화기준에 맞게 수정함을 위원님들께서 심
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붙임 : 관련법령

2006. 11. 3

보고자 : 김 완 섭

〈수정의견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비 고
<p>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 예산 제 운영 조례</p>	<p>제명 -----주민참여예산 제-----</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 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 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같은 법 시행령</u>-----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 ----- ----- -----.</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영등포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영등포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 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p>	<p>제2조(용어의 정의) ----- -----, 1. <u>구</u>----- 2. <u>구</u>----- -----.</p>	
<p>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 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 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 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3조(법령준수의무) ----- ----- ---- 「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자치 단체 ----- -----.</p>	
<p>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 구청장(“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제4조(구청장의 책무) <u>구청장</u>----- ----- ----- ----- -----.</p>	
<p>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 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영등포구의 예산 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p>	<p>제5조(주민의 권리) ----- <u>조례</u> <u>가</u> 정한 범위 안에서 <u>구</u>----- ----- -----.</p>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9조(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2005.8.4)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005.12.30)